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015

발의연월일: 2024. 11. .28

발 의 자:천준호·민병덕·이해식

김 윤 • 박상혁 • 문금주

김현정 · 고민정 · 한민수

박해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가나 아파트 등의 주차장 진출입로를 막아 다수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사유지에 대한 주차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강제 이동 등의 행정조치가 어려움. 경찰이나 지자체에서는 사유지의 주차 문제는 사적자치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경찰권 발동이나 행정적 개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사적자치 영역임에도 사유지의 관리자가 주차질서 위반 차량에 대해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이동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법적 근거가 없고, 「민법」상 자력구제 규정에 근거해 주차장의 관리자가 강제 견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더라도 이동 및 보관 조치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쉽지 않음.

해외에서는 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나라들이 있음. 독일의 경우 사유지 주차 공간의 무단 사용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권한을 갖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점은 우리와 동일하지만 「민법」상 점유자의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규정에 따라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차량을 직접 견인 조치 할 수 있으며 견인비용은 불법주차자가 부담함.

미국의 경우 사유지에 무단 주차된 차량을 제거·견인하는 사항에 대해서 각 주의 법률 또는 행정규정이나 시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대체로 무단주차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사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권리, 견인 가능성에 대한 경고 표시판 설치 의무 등에 대하여각 주별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부설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이나 진출입을 저해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장 관리자가 직접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이동 과정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토록 함(안 제19조의3제2항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0조제3항제1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3항 및 제5항에"로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제5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킴으로 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 ④ 부설주차장(개방주차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자는 다른 자동차의 진입 또는 진출을 막거나 주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제4항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시킬 수 있다.

- ⑥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자동차 이동 조치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동 조치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이동 조치 표지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9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동차 이동 조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 이동 조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
법 등) ① (생 략)	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2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u><단서 신설></u>	<u>다만,</u>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제5항에 따라 자동차
	를 이동시킴으로써 발생한 손
	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부설주차장(개방주차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의 관리자는 다른 자
	동차의 진입 또는 진출을 막거
	나 주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
	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u><신 설></u>	⑤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제4
	항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30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 3. (생 략)

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그 자동차
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
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시킬 수 있다.

⑥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자동차 이 동 조치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하여야 한다.

<u>7</u>	제3힝	- 및	제5	<u>항에</u> -	 	_
					 	_
						_
					 	-

제3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

1.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동 조치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

	호까지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